

## 거창푸드종합센터 관리위탁 기간연장 동의안

#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2017. 2. 15.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7. 2. 16.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2017. 2. 27.

### 2. 제안이유

- 관내에서 생산·가공된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거창푸드를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보장, 농촌환경의 보존과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거창푸드종합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과 그간의 운영 노하우 활용을 위해 위탁 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 3. 위탁개요

- 시설명: 거창푸드종합센터
- 위치: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372
- 규모
  - 건물: 712.5㎡(지상 2층)
  - 건물: 392㎡(준공: 2007. 12. 28.)
  - 시설: 전시판매대 등 13종, 소분실 장비 26종, 도정기 4종, 냉장탑차 등 차량 3대

○ 주요내용

- 전시판매장 운영, 농산물 순회수집 및 배송사업, 소량생산 농산물 꾸러미 판매, 잡곡 동정시설 운영, 인터넷 쇼핑몰(거창몰) 운영 등

○ 운영계획

- 위탁단체: 거창공유농업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 김제열)
- 위탁기간: 2016. 12. 24. ~ 2019. 12. 23.(3년간)
  - 1회 위탁기간: 2013. 12. 24. ~ 2016. 12. 23.(3년간)
- 인력현황: 이사장 1명, 상임이사 1명, 업무담당 4명
- 위탁내용: 거창푸드종합센터 운영 관리

#### 4. 전문위원 검토요지

- 본 동의안은 관내에서 생산·가공된 거창푸드를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보장과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관리·운영 중인 『거창푸드종합센터』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르면 “수탁 기관에 재계약 할 때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거창푸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거창푸드 종합센터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갱신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항에 따르면 “사무의 민간 위탁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의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함께 혼용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 운영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수탁기관 거창공유농업사회적협동조합과 3년간(1회) 위탁 기간연장에 따른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은 없으나,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60일이 경과한 2017. 2. 15.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는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면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해당 없음**

**7. 수정안 요지: 해당 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해당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 대책 요구**

⇒ 위탁기간 연장: 기간 만료일 60일전 의회 동의